

〈논문〉

##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직업선택 변화와 그 원인\* - 판·검사 선택의 하락과 중대형로펌 선택 현상을 중심으로 -

李俊錫\*\*

### 요약

필자는 사법연수생들이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치면서 직업선택이 어떻게 변화하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필자는 42기 사법연수생들을 상대로 사법연수원 입소 직후 시점(1학기)과 원내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시점(4학기) 2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2번의 설문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사법연수생들의 직업선택이 상당히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사법연수원 입소 직후 시점의 사법연수생들은 대부분 판사, 검사를 선호하였다. 하지만 4학기에 접어들자 판사, 검사에 대한 선호가 상당부분 감소하였고, 반면 중대형로펌 소속변호사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다.

그 원인으로서는, 먼저 객관적 요인으로, 로클릭 제도의 도입과 함께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판사임관이 불가능해진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주관적 요인으로, ①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사회정의실현에 대한 의지가 4학기로 접어들면서 감소한 점, ② 판사, 검사라는 직업을 통해 ‘사회정의실현(공익활동)’, ‘경험 많은 선배 법조인의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 ‘만족스러운 직장위치’, ‘창의적인 업무 경험’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주제어: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생, 직업선택, 가치관, 사회화, 법조일원화

\* 우선 부족한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의 글을 추천하여 서울대학교 「법학」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이재협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도와주시고, 너무나도 과분한 격려를 해주신 김상준 부장판사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양현아 교수님, 조홍식 교수님, 이용규 변호사님, 오용규 판사님, 송현경 판사님, 소중한 의견을 통해 부족한 논문을 발전시키는 데 크나큰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 작성의 전 과정을 도와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 김지희 학생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42기 사법연수생들과 사법연수원 각 반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박사통합과정.

## 1. 문제의식

### 가.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실증연구의 필요성

#### 1)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객관적 연구의 不在

2013년 1월 21일 42기 사법연수생 854명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그동안 42기 사법연수생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복잡했다. 한편에서는 ① 입소 시점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 우선 임용에 반대하여 절반 이상이 입소식 참석을 거부하는<sup>1)</sup> 등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지, ② 다들 돈을 버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사회정의실현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고액의 연봉을 약속하는 대형로펌만을 선호한다는 등의 비판이 존재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① 41기 사법연수생들에 이어 공익활동만을 전업으로 하고자 하는 동기변호사를 위해 많은 42기 사법연수생들이 후원금을 낸 사실<sup>2)</sup>을 근거로, 42기 사법연수생들의 공익적 관심이 여전히 적지 않으며, ② 같은 맥락에서 42기 사법연수생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돈보다는 명예 등을 중시하기 때문에, 대형로펌 소속변호사보다 판사, 검사를 선호한다는 주장이 반대편에 존재했다.

하지만 그 어떤 외부의 시선도 직접 42기 사법연수생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물어 보지는 않은 채, 여러 가지 막연한 추측만을 제시하고 있었을 따름이다. 이제는 막연한 추측을 넘어, 42기 사법연수생들이 실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2) 모든 법조인이 거쳐야만 했던 사법연수원 과정<sup>3)</sup>

설령 그동안 사법연수생들의 가치관 및 직업선호에 대한 실증연구가 없었음을 인정하더라도, 사법연수원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업선호, 가치관 등의 변화가 과연 학문적으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사회를 이끌어 온, 그리고 앞으로도 이끌어 갈 엘리트집단인 법조인들은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바로 모두 2년간의 “사법연수원

1) 김성현, “연수원 42기, ‘밥그릇’ 지키려 집단행동 물의”, 머니투데이(2011. 3. 2),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030214015580217&type=1>, 2013. 1. 21. 방문.

2) 유정인, “공익변호사 돕자” 사법연수원 42기 ‘낭만펀드’ 설립, 경향신문(2012. 6. 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042150105&code=10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042150105&code=100100), 2013. 1. 21. 방문.

3) 물론 향후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변화가 예상된다.

과정”<sup>4)</sup>을 겪었다는 점이다. 만약 예비법조인들이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치면서 특정한 방향으로의 직업선택, 가치관 등의 변화를 겪는다면, 그것은 이미 과거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현재 법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비단 사법연수생들뿐만 아니라 현역 법조인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고, 법조계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로서, 사법연수원 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물론 42기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이번 연구결과만을 가지고, 가령 약 40년 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기 사법연수생들도 같은 변화를 겪었으리라 추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각 기수별 사법연수생들이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가치관 및 직업선택의 변화를 겪어왔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선행연구들이 거의 없는 현 상황<sup>5)</sup>에서, 본 논문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작은 시도로 42기 사법연수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연구를 시작하게 되

4) 사법연수원 과정을 통해 예비법조인들의 사고방식에 변화가 일어난다 할 경우, 이는 비단 수업 및 과제부여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원내교육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또 다른 중요한 변화의 원인은 예비법조인들이 사법연수원 과정을 통해 비로소 본격적으로 현직 법조인들과 대면하면서 법조계의 현실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하에서 필자가 사용하는 “사법연수원 과정”의 의미는 공식적인 원내교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직 법조인들과의 교류 등을 포함하는 좀 더 넓은 의미를 밝혀둔다.

5) 예외적으로 1990년과 2010년에 각각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법연수생들 중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진로선택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우수한 사법연수생들이 판사, 검사를 덜 지원하고, 대형로펌에 더 많이 지원한다는 신문기사가 있었다. 손진석, “‘검찰 싫어’... 서울法大 출신 신입검사 크게 줄어”, 조선일보(2010. 10. 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11/2010101100076.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11/2010101100076.html), 2013. 4. 20. 방문. 위 신문기사에서는 검사 선호 감소의 원인으로 ① 과거에 비해 검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아진 점, ② 변호사 개업 시 판사 출신에 비해 적은 기대수입, ③ 각종 비위로 인한 이미지 실추, ④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에 대한 거부감, ⑤ 신세대들에게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는 사명감만 요구하기는 쉽지 않음을 들었다. 또한 대형로펌 선호 증가의 원인으로 ① 신세대들이 지방근무를 꺼리는 점, ② 곧바로 억대 연봉을 받고 싶어하는 점을 꼽았다.

위 기사는 선행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좋은 자료를 활용해, 본 논문이 다루려는 주제에 관하여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하지만 위 기사가 활용한 자료는 특정 학교 출신만을 다룬 자료로서, 사법연수생 전체를 상대로 일반화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위 기사는 그렇다면 판사, 검사를 지원하지 않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 사법연수생들이 어느 직장을 선택하였는지, 과연 대형로펌을 선택하였는지에 대해선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익명의 사법연수원 교수, 대형로펌 변호사의 말만을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인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있다. 그리고 적어도 현재와 유사한 법조계 환경이 구축된 약 2000년대 이후, 즉 소위 대형로펌이 한국 사회에 자리를 잡고<sup>6)</sup>, 42기 사법연수생들과 마찬가지로 매년 약 1,000명의 사법연수생들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기 시작한 시점<sup>7)</sup> 이후부터는, 사법연수생들이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치면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변화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

### 3) 각 법조직역에 대한 인상이 결정되는 시기

뿐만 아니라 필자가 사법연수원 과정을 경험한 바 있는 16명의 사법연수생 또는 새내기 법조인들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sup>8)</sup>에 따르면, 예비법조인들은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과정에 들어서야 비로소 현직법조인들과의 본격적인 대면을 통해 여러 법조직역의 특성을 알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어떤 법조직역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

물론 예비법조인들이 사법연수원 입소 전에도, 사법시험에 응시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법조직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사법시험을 합격하기 이전에는 일단 사법시험에 붙는 것이 급선무이고 또 그것 자체가 워낙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조직역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막연하게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합격 이후 고민하면 되는 것으로 미뤄두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전에는 실제 판사, 검사, 변호사들을 만날 기회가 그리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도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게 되면, 이전과는 달리, 이제 정말로 얼마 안 있어 여러 직업들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즉 더 이상 고민을 미뤄둘 수 없게

6) 대략 2000년대부터는 현재 한국의 대형로펌들(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등)이 인수합병 등을 마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이었다. 관련 기사로는 문병선, “대형로펌간 ‘빅딜’ 다가온다”, 자본시장 미디어 ‘the bell’(2009. 4. 15), [http://www.thebell.co.kr/front/thebell\\_free/article/article.asp?key=51551](http://www.thebell.co.kr/front/thebell_free/article/article.asp?key=51551), 2013. 4. 17. 방문.

7) 구체적인 시점과 관련하여서는, 2004년 1월 16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법연수원 33기 때부터 처음으로, 한 해 사법연수원 수료 인원 숫자가 966명으로 증가하였다. 신종철, “제33기 사법연수생 966명 수료”, 오마이뉴스(2004. 1. 1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64321](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64321), 2013. 4. 17. 방문.

사법연수원 33기보다 한 해가 빠른 사법연수원 32기의 경우, 총 인원이 800명이었다. 박신애, “제32기 사법연수생 8백명 입소식”, 법률신문(2001. 3. 2),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332&kind=AA>, 2013. 4. 17. 방문.

8) 이준석, “사법연수원 과정이 공익적 관심을 갖고 있던 예비법조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인권법평론**, 제6호(2011. 3), pp.237-268.

된다. 그러다보니 사법연수생들은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그 어떤 시기보다도 치열하게 여러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현직 법조선배들을 만나 진로를 탐색해보게 되고, 여러 법조직역의 특성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그리하여 하나의 진로를 선택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나면, 그 후엔 아무래도 개인의 경험이 자신이 선택한 특정 법조직역에 국한되게 된다. 따라서 사법연수원 시절 형성된 다른 법조직역에 대한 인상은, 평생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사법연수원을 41기로 수료하였던 필자 스스로의 경험에 비추어봐도 그러하다. 따라서 사법연수생들이 사법연수원 과정을 통해 여러 법조직역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형성해 나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비단 사법연수생들뿐만 아니라 현역 법조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

#### 나. 양적 연구의 필요성

필자는 앞서 언급하였던 필자의 논문<sup>9)</sup>에서, ① 공익적 관심을 갖고 있던 예비법조인들이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치면서 공익적 관심의 감소 등 가치관의 변화, 여러 법조직역의 특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겪게 되는 과정, ② 그리고 이로 인해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자신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당시 선호했던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필자가 사용했던 심층인터뷰 기법은, 인터뷰 대상자들이 사법연수원 과정을 통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를 심도 있게 포착해 내는 데에는 유용하였다. 하지만 필자의 위 연구에 대해서는 표본숫자(sample)가 16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유로, ‘위 16명의 경험이 과연 사법연수생 전체의 경험을 대표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본 논문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법연수생들의 직업선택이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인이 그러한 직업선택의 변화를 낳는지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위 설문조사결과를 선행연구, 필자가 과거 수행했던 심층인터뷰 결과, 사법연수원을 41기로 수료하였던 필자 스스로의 사법연수원 경험 등과 비교분석해본 후, 사법연수원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9) 이준석, 전계논문, pp.237-268 이하를 참조할 것.

## 2. 선행연구

### 가. 미국 로스쿨

#### 1) 의의

미국에서는 로스쿨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이 어떠한 직업 선호 및 가치관의 변화를 겪게 되는지, 이른바 로스쿨의 사회화 효과(socialization effect)에 관하여(법)사회학자들의 양적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sup>10)</sup>

물론 한국의 사법연수원 과정과 미국의 로스쿨 과정은 여러 측면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미국 로스쿨 학생들과 달리 한국의 사법연수생들은 ① 법원 공무원 신분을 획득하게 되며, ② 오직 실무가(판사, 검사, 변호사)들에 의해서만 교육을 받게 되고, ③ 배우는 내용이 훨씬 더 실무에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 로스쿨 과정에 대한 연구결과가 한국의 사법연수원 과정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법연수원과 미국 로스쿨 모두, ① 졸업 이후 곧장 법조인으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앞으로 일할 직업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점 ② 성적에 기초하여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직장의 범위가 대부분 결정되기 때문에, 학점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점, ③ 법과대학 학부과정과 달리 교양과목은 전혀 없으며, 오직 법학만을 공부한다는 점 등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 로스쿨 과정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 2) Robert V. Stover의 연구

미국 로스쿨 과정에 대한 연구 중 주목할 만한 것이 Robert V. Stover의 연구<sup>11)</sup>이다. 그는 Denver University Law School에서 모든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그리고 로스쿨생들의 졸업시점에 다시 한 번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즉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병행했다는 것이 이 연구의 강점이다. 또한 Robert V. Stover 자신도 Denver University Law School에서 3년의 정규 과정은 아니

---

<sup>10)</sup> Robert V. Stover, *Making It and Breaking It: The Fate of Public Interest Commitment during Law Schoo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9); Howard S. Erlanger and Douglas A. Klegon, "Socialization Effects of Professional School: The Law School Experience and Student Orientations to Public Interest Concerns", *Law & Society Review*, Vol. 13 (1978), pp.11-35 등.

<sup>11)</sup> Robert V. Stover, *supra* note 10. 위 책의 내용 요약은 이준석, 전제논문, pp.239-240을 참조.

지만 2년 과정을 수학하면서 참여관찰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로스쿨 과정을 거치면서 중대형로펌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는 증가하였다. 반면 공익적 활동을 담당하는 법조직역(시민단체 상근변호사 등)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는 상당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① 직업에 대한 기대치(expectation)의 변화와 ② 가치관(value)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 Robert V. Stover는 해석하였다.

직업에 대한 기대치(expectation)의 변화로는 ① 새내기 변호사가 공익적 직업을 통해 실제로 이타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에서 공익적 직업에 대한 기대(expectation)가 감소하였고 ② 공익적 직업이 새내기 변호사에게 가치있는 경험, 지식, 사람들과의 접촉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인 커리어 전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기대가 감소하였으며 ③ 로스쿨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전문성 실현(craft satisfaction)에 대한 열망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은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생산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을 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중대형 로펌에서의 기업법무업무가 이러한 창조적인 업무수행이라는 만족감을 줄 수 있다고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중대형로펌에 대한 선호도는 증가하였다.

가치관의 변화 측면으로는 자신의 법조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회적·정치적 변화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욕망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Robert V. Stover의 연구결과 및 설문지 구성은 필자의 설문지 작성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 나. 한국의 법조인 양성과정

한국의 사법연수원 과정에 대해서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인들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종합해 에세이 형식으로 적은 책은 몇 권 존재한다.<sup>12)13)</sup> 하지만 필자가 확인한 한도 내에선,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치면서 사법연수생들이 겪게 되는

12) 최규호, **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계 속 이야기**(법률저널, 2009); 박원경 등, **판사 검사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부키, 2006); 조금 더 비판적 성격을 띠고 있는 글로는 김두식, **헌법의 풍경 :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교양인, 2004), pp.115-143; 김두식, **불멸의 신성가족 - 대한민국 사법패밀리가 사는 법**(창비, 2009), pp.215-234 등이 있다.

13) 인접 연구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군미필자들이 군법무관으로서 군에 복무하는 기간 동안에, 군복무경험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참여관찰을 통해 연구한 이국운의 작업이 존재한다. 이국운, “청년법관의 법적 사회화 환경: 군복무기간에 대한 참여관찰의 보고를 중심으로”, **서울법학**, 제2권(1998), pp.329-354.

가치관 및 직업선호 등의 변화를,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시계열적으로 실증 분석한 논문은 찾지 못하였다.<sup>14)</sup>

다만 종단 연구(longitudinal study)가 아닌 횡단면 연구(cross-sectional study)로는 예비법조인들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먼저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증연구로 이호영<sup>15)</sup>의 연구가 있다. 이호영은 2005년 무작위로 추출한 36기 사법연수생 28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력, 출신지역, 사회경제적 지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법연수생들이 우리 사회 평균 이상의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2009년과 2010년 2차례에 걸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공익적 관심의 차이, 공익인권과 관련된 직업의 선호 정도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바 있다.<sup>16)</sup>

### 3. 설문조사방법

#### 가. 설문조사의 설계

필자는 42기 사법연수생들이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사고의 변화를 겪게 되는지 측정하기 위해, ① 먼저 42기 사법연수생들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직후, 전체 42기 사법연수생들 중에서 무작위로 설문조사 대상자를 추출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② 그리고 42기 사법연수생들이 사법연수원 원내교육 과정을 마치는 시점에, 마찬가지로 전체 42기 사법연수생들 중 무작위로 설문조사 대상자를 추출하여 2차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③ 그 후 2번의 설문조사 결과를 서로 비교하였다. 즉 이른바 통합된 횡단면 자료(pooled cross-section

14) 관련 주제에 대해 필자가 심층인터뷰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한 적이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준석, 전개논문, pp.237-268.

15) 이호영, 사법부의 판결경향 및 구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부르디외의 ‘아비투스’와 ‘장’ 개념을 동원하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2006. 2), pp.113-126.

16) 2009년 조사자료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09년 전남대 로스쿨 재학생의 인권의식 및 공익인권교육 수요도 조사”, [http://hrcenter.jnu.ac.kr/intranet/bbs/board.php?bo\\_table=event1&wr\\_id=18](http://hrcenter.jnu.ac.kr/intranet/bbs/board.php?bo_table=event1&wr_id=18), 2013. 1. 21. 방문. 2010년 조사자료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0년 전남대 로스쿨 재학생의 인권의식 및 공익인권교육 수요도 조사”, [http://hrcenter.jnu.ac.kr/intranet/bbs/board.php?bo\\_table=event1&wr\\_id=20](http://hrcenter.jnu.ac.kr/intranet/bbs/board.php?bo_table=event1&wr_id=20), 2013. 1. 21. 방문.



data)를 분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 ‘1차 설문조사 대상과 2차 설문조사 대상을 동일하게 유지해야만, 즉 소위 패널자료(panel data)를 활용해야만 연구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sup>17)</sup>

물론 설문조사 대상을 동일하게 유지할 경우, 만약 응답자가 1학기에서 4학기로 접어들면서 직업선택을 변경하였다면, 그러한 직업선택의 변화가 어떠한 변수(가령 가치관, 특정 직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의해 몇 %까지 설명될 수 있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up>18)</sup>

그러나 설문조사 대상을 동일하게 유지하지 않더라도, 42기 사범연수생들의 평균적인 직업선택, 각 법조직역에 대한 인식, 가치관의 변화 추이는 파악이 가능하다. 그리고 42기 사범연수생들의 직업선택 변화와 가치관 등의 변화와의 상관관계 역시, 비록 설문조사대상을 동일하게 유지한 때만큼 몇 %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직접 분석해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추이를 비교함으로써 대략의 상관관계를 가늠해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 나. 설문조사 수행경과

### 1) 1차 설문조사: 사범연수원 1학기 시점

필자는 42기 사범연수생들이 사범연수원에 입소<sup>19)</sup>한 직후인 2011. 3. 9.에, 5, 8, 9, 10, 11반 42기 사범연수생들<sup>20)</sup>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사범연수원 측에선 사범연수생들을 각 반에 배정할 때 사범시험 성적, 나이, 출신학교, 성별 등이 골고루 섞이도록 한다. 따라서 총 14개 반에 소속되어 있는 42기 사범연수생들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5개 반 소속 사범연수생들을 상대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무작위 추출로서 전체를 대표하기에 충분하다. 1차 설문조사는 사범

17) 통합된 횡단면 자료(pooled cross-section data)와 패널 자료(panel data)의 차이에 대해선 다음 자료들을 참조함. Jeffrey M. Wooldridge,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MIT press, 2002), pp.128-129; Eric Zivot, Lecture notes on pooled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2012), <http://faculty.washington.edu/ezivot/econ582/introduction-paneldata.pdf>, 2013. 5. 2. 방문.

18) 앞서 언급한 Robert V. Stover, *supra* note 10의 연구는 1차 설문조사와 2차 설문조사의 설문조사 대상자를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그리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본문에 언급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Robert V. Stover, *supra* note 10, p.30 이하 등.

19) 입소 시점은 2011. 3. 2.이었다.

20) 당시 한 반에는 61명의 사범연수생이 소속되어 있었다.

연수원 측에서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적성검사 시간에 적성검사<sup>21)</sup>와 함께 실시된 터라, 설문조사 응답율이 약 95%(305명 중 289명 응답)로 매우 높았다.

## 2) 2차 설문조사: 사법연수원 4학기 시점

2차 설문조사는 42기 사법연수생들이 수료하는 시점인 2013년 1월에, 1차 설문조사 대상자들을 상대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사법연수원 교육과정 개편 등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법연수원 원내교육과정의 마지막 시점이자 4학기 실무수습과정 시작 직전인, 2012. 5. 23.에 2차 설문조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 날은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42기 사법연수원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원내강의가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있었다. 필자는 위 강의를 들으러 온 42기 사법연수생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필자는 조사보조원 2명과 함께, 위 강의를 들으러 온 42기 사법연수생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주었다. 그리고 필자는 강의 시작 전 사법연수원 측의 협조를 구하여, 대강당 강단에 서서 42기 사법연수생들을 상대로 본 설문조사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 그 후 강의를 듣고 나오는 42기 사법연수생들을 상대로 그들의 응답이 적힌 설문지를 수거하였다.<sup>22)</sup>

정확히 몇 명에게 2차 설문지를 나누어 주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2차 설문조사의 정확한 응답율을 측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42기 사법연수생들이 총 854명이고, 응답이 적혀진 채로 수거된 설문지가 199장임을 고려할 때, 최소한 약 23.3%의 응답률은 달성하였다. 그리고 당시 사법연수원에서의 모든 시험이 끝난 뒤라 42기 사법연수생들 중 일부가 강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응답률은 더 높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응답률이 상당함을 고려할 때, 자발적 응답자 및 설문조사 당일날 출석하지 아니한 42기 사법연수생들로 인한 선택편의(selection bias) 문제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선택편의 문제가 그리 크지 않음은, 1차 설문조사 응답자와 2차 설문조사 응답자의 연령 및 성별 구성이 유사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하의 <표 1>,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1차 설문조사 응답자 전체의 평균 출생연도는 1982.5(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반올림함)이고, 2차 설문조사 응답자 전체의 평균 출생연도 역시

21) 적성검사란 매년 사법연수원에 처음 입소한 사법연수생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간단한 성격검사로써, 사법연수생들이 부담없이 임하는 설문조사이다.

22) 이 때 사용한 2차 설문지는 1차 설문지와 대부분 동일하다. 다만 로클릭 제도의 신설 등에 따라, 여러 범죄지역들을 제시하는 부분들에 “법원에서의 로클릭”과 “장기 군법 무관” 항목을 추가하였다.

1982.4(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반올림함)로, 양자는 거의 동일하였다. 또한 1차 설문조사 응답자의 남녀 성비는 남성 59.7%, 여성 40.2%(둘 다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반올림함)였고, 2차 설문조사 응답자의 남녀 성비는 남성 52.3%, 여성 47.7%(둘 다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반올림함)로, 양자는 유사했다.

<표 1> 1차 설문조사 응답자의 출생연도

Min. (최소값)	1st Qu. (1사분위값)	Median (중간값)	Mean (평균값)	3rd Qu. (3사분위값)	Max. (최대값)
1968	1980	1983	1982.5	1983	1988

<표 2> 2차 설문조사 응답자의 출생연도

Min. (최소값)	1st Qu. (1사분위값)	Median (중간값)	Mean (평균값)	3rd Qu. (3사분위값)	Max. (최대값)
1971	1980	1983	1982.4	1985	1987

#### 4.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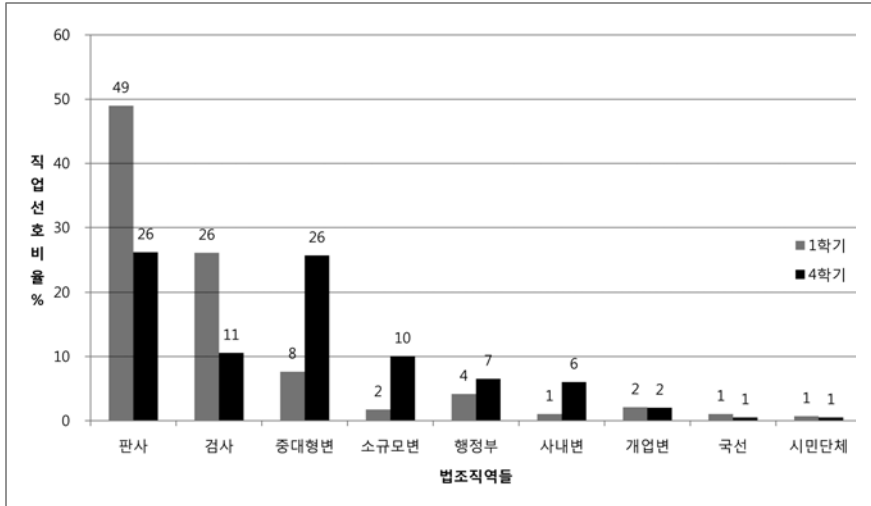
##### 가. 직업선택의 변화: 판·검사 선호 감소, 중대형로펌 선호 증가

아래의 <그래프 1>은 1학기, 4학기 시점<sup>23)</sup>에 설문조사에 응한 42기 사법연수생들 중 몇 퍼센트가 어떤 직업을 자신의 첫 직업으로 가장 원하는지 나타내고 있다. 필자는 다양한 법조 직업들(1차 설문지: 9개, 2차 설문지: 11개)<sup>24)</sup>을 응답자

23) 1차 설문조사는 42기 사법연수생들이 1학기 과정을 이수하고 있을 당시에 이루어졌고, 2차 설문조사는 42기 사법연수생들의 4학기 과정이 시작하기 직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1차 설문조사를 '1학기 설문조사', 2차 설문조사를 '4학기 설문조사'와도 혼용하여 표기하도록 하겠다.

24) 1차 설문지에 제시하였던 법조직역은 다음 9가지이다. ① 판사 ② 검사 ③ 스스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변호사로 일하는 것 ④ 소규모 변호사 사무실(변호사 20명 이하)에 고용되어 고용변호사로서 일하는 것 ⑤ 중대형 로펌(변호사 20명 이상)에 고용되어 일하는 것 ⑥ 기업의 사내변호사 ⑦ 민주노총,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등 시민단체 상근변호사 ⑧ 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부의 공무원 ⑨ 국선전담변호사.

에게 제시하고, 가장 선호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하였다.<sup>25)</sup>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 법조지역의 선호비율, 그리고 1학기과 4학기에 걸쳐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직업 선호도 변화폭은 다음과 같다.



<그래프 1> 42기 사법연수생들의 1학기 및 4학기 직업선호<sup>26)2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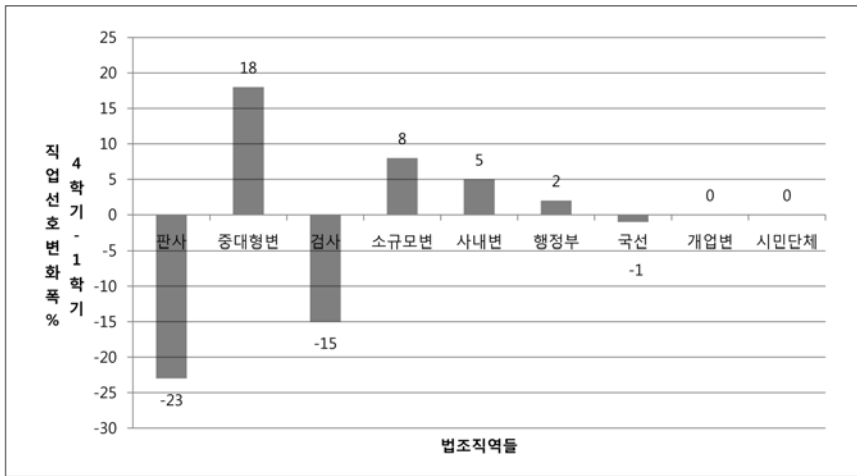
2차 설문지에는 앞서 언급한 바대로 위 9가지에 “법원에서의 로클릭”과 “장기 군법무관” 항목을 추가하였다.

25) 해당 문항의 문구는 다음과 같다. “위 직업들 중 귀하가 가장 원하는 첫 직장을 선택하여 그 번호를 아래에 적어주십시오.”

26) <그래프 1>의 X축은 응답자들이 선택한 각 법조지역을 뜻한다. 각 직업의 명칭은 화면 구성상 요약하여 표기하였다. 전체 명칭은 각주 24를 참조할 것. Y축은 설문에 응한 사람들 전체 중에서 해당 직업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각 그래프 위에 적혀있는 숫자는 해당 그래프의 수치 값이다.

로클릭의 경우는 ① 1학기 시점엔 설문지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4학기 시점과의 변화폭을 드러낼 수 없었고, ② 4학기에도 미미한 숫자인 1.5%만이 로클릭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기에 논의의 편의상 표시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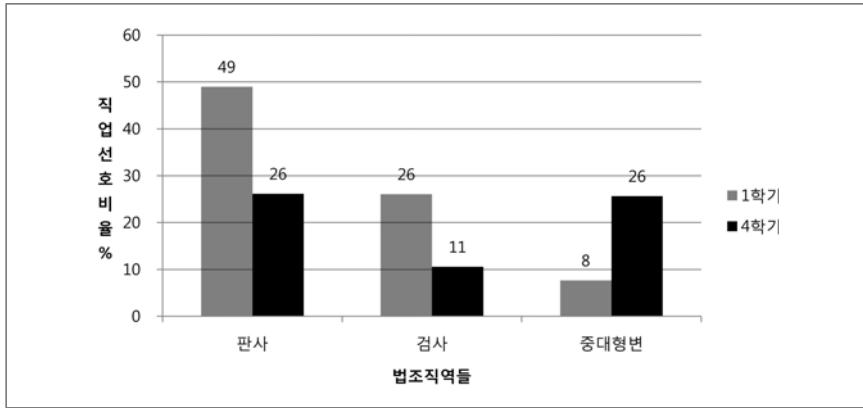
27) 1학기 설문조사 수행 시점에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판사즉시임용제도의 폐지 및 로클릭 제도의 도입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4학기 설문조사 수행 시점에는 판사즉시임용제도의 폐지 및 로클릭 제도의 도입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제도변화로 인한 설문지 응답자들의 혼란을 막고 1학기 설문조사와의 연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자는 2차 설문지에 설문지 응답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으로 ‘로클릭’ 항목을 추가하고, 기존의 ‘판사’ 항목은 ‘판사(로클릭이 아닌, 과거와 같은 완전한 판사임관)’라고 변경하여 2차 설문지에 명시하였다.



<그래프 2>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직업선호 변화폭(4학기-1학기)<sup>28)</sup>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판사, 검사, 중대형로펌 소속변호사가 1학과 4학기 모두에 걸쳐, 42기 사법연수생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되는 직업으로 나타났다(비록 위 세 직업 중 어떤 직업이 더 많이 선호되는지는 1학과 4학기에 걸쳐 큰 변화가 있었지만 말이다). 여타의 직업들은 ① 이들을 선호하는 42기 사법연수생들도 많지 않았고, ② 1학기에서 4학기로 옮겨가면서 직업선호도의 변화폭 역시 그리 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분석의 실익이 높은 위 세 직업을 중심으로 설문조사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위 세 직업의 직업선호비율만을 따로 분리해 제시한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28) <그래프 2>의 X축은 응답자들이 선택한 각 법조직역을 뜻한다. Y축은 '특정직업의 4학기 시점 선호비율-1학기 시점 선호비율'값(단위: %)을 나타내고 있다. 왼쪽부터 절대값이 높은 순서(즉 변화폭이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로클릭의 경우는 <그래프 1>에서와 같은 이유로 표시하지 않았다.



<그래프 3> 판사, 검사, 중대형로펌 소속변호사의 직업선호비율

<그래프 3>에 따르면 1학기엔 판사, 검사에 대한 압도적인 선호가 돋보인다. 1학기에 판사 또는 검사를 선호하는 사법연수생은 전체 사법연수생의 75%를 차지할 정도이다.<sup>29)</sup> 이 시점엔 중대형로펌 소속변호사에 대한 선호가 3위이긴 하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사, 검사에 대한 4학기 사법연수생들의 압도적 선호는 4학기로 접어들면서 급감한다. 그러한 변화와 함께 중대형로펌 소속변호사에 대한 선호가 급증한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는 중대형로펌 소속변호사가 판사와 함께, 사법연수생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되는 직장이 된다. 그리고 검사에 대한 선호비율(10.6%)은 비록 3번째로 높긴 하지만, 4번째로 선호되는 직업인 소규모 변호사 사무실의 고용변호사(10.1%)와 비슷한 정도에 머무르게 된다.

### 나. 직업선호 변화의 원인

위와 같이 4학기 사법연수생들의 직업선호가 급격히 변화하게 된 원인으로는, ① 객관적 요인으로서,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판사 임관이 불가능해지고 오직 로클릭 임관만이 가능해진 점과 ② 주관적 요인으로서, 4학기 사법연수생들의 사고

<sup>29)</sup> 이러한 판사에 대한 4학기 사법연수생들의 높은 선호는 곧 4학기 사법연수생들의 신뢰 보호 필요성으로 연결되어, ‘4학기 사법연수생들에게 법관 즉시임용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법원조직법 부칙에 대한 한정위헌결정[2012. 11. 29. 선고 헌법재판소 2011헌마786, 2012헌마188(병합)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방식이 변화한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 요인의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i) 삶에서 추구하는 여러 목표들의 우선순위가 변화한 점 ii)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여러 목표들을 달성함에 있어서, 해당 직업이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점 등이 그에 해당한다.

### 1) 객관적 요인

#### 가) 수료 직후 판사 임관제도 폐지와 로클릭 도입

41기 사법연수생들과는 달리, 42기 사법연수생들부터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판사로 바로 임관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42기 사법연수생들이 일찌감치 판사에 대한 꿈을 접고, 다른 진로 위주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특히 위와 같은 제도 변화는, 그동안 기존 제도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해오던 42기 사법연수생들이 사법연수원에 막 입소하여 1차 설문조사에 응하고 난지 3개월 후(2011. 6. 22.)에 단행되었다.<sup>30)</sup> 따라서 42기 사법연수생들의 마음의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2차 설문조사에서 42기 사법연수생들의 판사 선호가 감소한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42기 사법연수생들은 곧장 판사를 지원할 수 없게 된 대신,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원의 로클릭(재판연구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로클릭은 판사와 달리 2년 계약직이며, 계약기간은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 계약기간 종료 후엔 본인 스스로 1년 동안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한다. 그렇게 3년의 법조경력을 채우고 나면 그제서야 정식 판사임용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중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들도 3년의 법조경력을 채우면 판사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물론 로클릭 출신 위주로 판사를 채용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로클릭의 지위는 과거의 판사에 비해 불안정하다. 이러한 로클릭의 불안정한 지위 때문에, 판사채용 방식이 과거와 같았으면 판사를 지원했을 42기 사법연수생들 중 일부는, 판사가 될 수 없는 이상, 로클릭 대신 검사 혹은 중대형로펌 소속변호사를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도 변화가 42기 사법연수생들의 판사 선호 감소, 중대형로펌 선호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증거는 또 하나 있다. 수험뉴스를 주로 다루는 <법률저널>에서 2010년 42기 사법연수생들이 아직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전에, 그리고 2011년

30) 장진복, “국회 사개특위 ‘경력법관제·로클릭제’ 통과”, 법률방송(2011. 6. 23), <http://www.courtvtv.kr/news/articleView.html?idxno=704>. 2013. 4. 20. 방문.

43기 사법연수생들이 아직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전에, 그들에게 앞으로의 진로를 묻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결과, 42기 예비 사법연수생들은 판사(60.6%), 검사(24%), 변호사(15.3%)라고 응답한 반면, 43기 예비 사법연수생들은 판사(46.6%), 검사(26.2%), 변호사(27.2%)라고 응답하였다.<sup>31)</sup> 2010년 42기 예비 사법연수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할 당시엔, ‘판사 즉시임용 폐지 및 로클릭 도입’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만약 위 법률저널의 설문조사가 신뢰할 만한 방법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위 설문조사결과는 ‘판사 즉시임용 폐지 및 로클릭 도입’으로 인해 판사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고, 변호사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였으며, 검사에 대한 선호도는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필자의 설문조사결과와 일치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나) 판사 즉시임용제도 폐지에 따른 영향의 제한된 설명력

##### (1) 법률저널 설문조사와의 비교

다만 오직 위 객관적 요인만을 가지고 판사 선호의 감소폭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위 법률저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43기 예비 사법연수생들의 판사 선호는 42기 예비 사법연수생들의 그것보다 14%p 더 낮고, 변호사 선호는 약 12%p 더 높다. 필자가 수행한 2차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판사 선호는 1차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그것보다 23%p 더 낮고, 중대형로펌 소속변호사의 선호는 18%p 더 높다. 즉 단순비교를 하더라도, 필자가 수행한 설문조사에서의 응답집단간 차이가 법률저널의 설문조사결과보다 더 크다.

이러한 추가적인 차이는, 사법연수원 과정을 통해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사고방식이 변화하였고, 이로 인해 법률저널의 설문조사결과보다 판사 선호가 더 많이 감소하고, 중대형로펌 소속변호사에 대한 선호가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법률저널 설문조사에서는 두 응답집단간의 차이가 객관적 제도변화 뿐이었다. 하지만 필자의 설문조사에서는 두 응답집단간의 차이로, 객관적 제도변화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 과정에 대한 경험 여부’가 추가로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

31) 기사상으로는 42기 사법연수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데, 본문의 내용은 필자가 이상연 기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한 부분이다. 이상연, “‘법관 즉시임용폐지’ 영향?...판사 선호도 ‘뚝’”, 법률저널(2011. 12. 16),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02006620034&tblName=tblNews](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02006620034&tblName=tblNews). 2013. 4. 20. 방문.



### (2) 가까운 미래에 판사임용이 가능한 상황

그리고 비록 42기 사법연수생들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시점에는 제도적 여건 때문에 판사를 지원할 수 없다 하더라도, 법조경력 3년 이상 쌓은 후에는 경력직 판사를 노려볼 수 있다. 특히 앞으로는 모든 초임법관들이 경력직 판사라는 루트를 통해 채용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숫자가 채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가까운 미래에 기회가 열려있는 상황에서, 42기 사법연수생들의 판사 선호 감소, 중대형로펌 선호 증가가 단순히 객관적 제도변화에 따른 결과라고만 보긴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2차 설문조사 시 ‘본인이 가장 원하는 첫 직장’의 항목에 ‘법원에서의 로클릭’과 ‘판사(로클릭이 아닌, 과거와 같은 완전한 판사임관)’를 구분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약 26%의 응답자들이 자신은 ‘과거와 같은 완전한 판사’를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하였고, 오직 1.5%의 응답자들만이 자신은 로클릭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설문조사 대상자들이 로클릭과 ‘과거와 같은 완전한 판사임관’의 차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2차 설문조사에 제시된 질문의 의미가 단순히 “현재 당신에게 선택가능한 옵션인 로클릭과 중대형로펌 중, 무엇을 첫 직장으로 가장 선호하는가요?”가 아니라, “만약 당신에게 로클릭과 중대형로펌뿐만 아니라, 기존 판사임용제도 하에 존재했던 판사까지도 선택이 가능하다면, 그 중 어떤 직업을 첫 직장으로 가장 선호하는가요?”임을 이해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42기 사법연수생들의 판사 선호 감소, 중대형로펌 선호 증가는 비단 객관적 제도변화만의 영향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 (3) 생각보다 낮은 자기합리화의 가능성

그리고 아래의 4. 다. 1)에서 보듯 우리는, 일응 타당해 보이는 ‘성적이 나빠서 판사, 검사를 지원할 수 없게 된 42기 사법연수생들이, 2차 설문조사 시점에서 자기합리화를 위해 판사, 검사를 더 이상 선호하지 않게 된 것처럼 응답한 것 아니냐’는 논리가,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그 설명력이 생각보다 낮음을 알게 된다. 이처럼 자기합리화 논리의 설명력이 생각보다 과장되어 있다는 점은, ‘판사 즉시임관제도 폐지로 인해 판사를 선택할 수 없게 되자, 그 대신 중대형로펌을 선택하게 된 42기 사법연수생들이, 2차 설문조사 시점에서 자기합리화를 위해, 마치 자신이 더 이상 판사를 선호하지 아니하게 된 것처럼 응답한 것 아니냐’는 논리의 설명력 역시 다소 과장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는 직업선택의 변화를 낳은 객관적 요인을 넘어, 주관적 요인 역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2) 주관적 요인

### 가) 삶의 목표의 우선순위 변화

#### (1) 설문조사결과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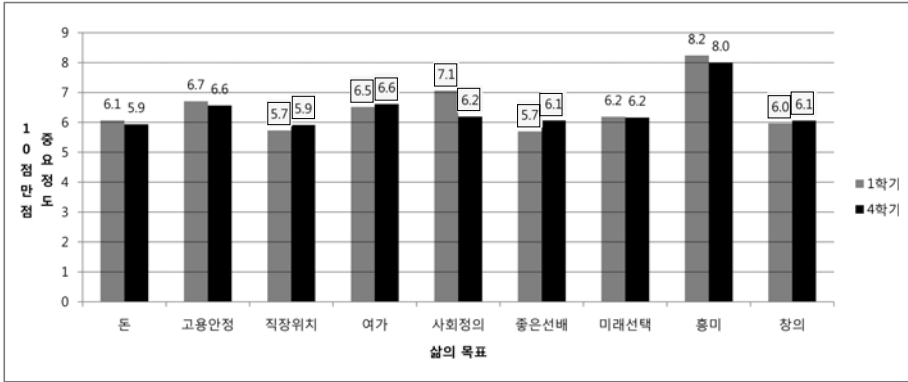
필자는 42기 사범연수생들에게, 직업선택을 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목표 9가지를 제시하였다.<sup>32)</sup>

- ① 많은 돈을 버는 것
- ②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직장을 갖는 것
- ③ 원하는 지역(가령 서울)에 위치한 직장을 갖는 것
- ④ 충분한 여가시간을 갖는 것
- ⑤ 사회적 정의실현을 위해 일하는 것(공익활동)
- ⑥ 경험많은 선배 법조인의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
- ⑦ 미래의 직업 선택에 있어서 보다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되는 것
- ⑧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서 일하는 것
- 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일을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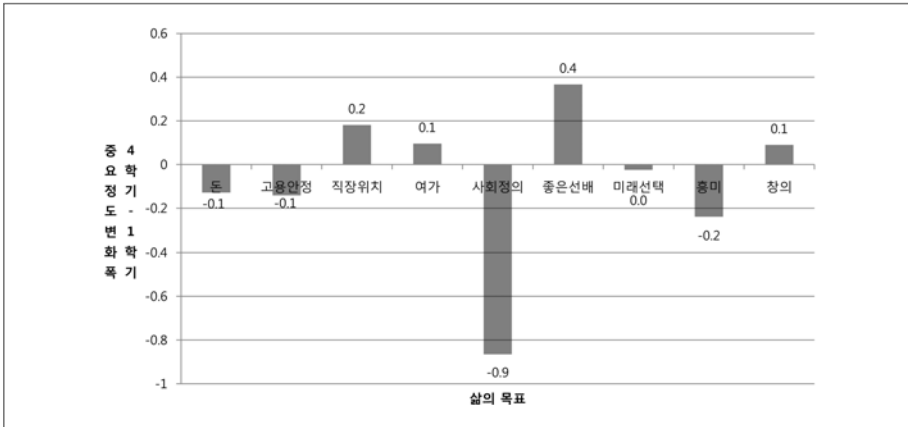
그 후 응답자가 각 목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10점 척도(10점에 가까울수록 해당목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1점에 가까울수록 해당목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임)로 응답하게 하였다. 이에 따른 각 목표별 응답의 평균값을, 1차 설문조사의 경우와 2차 설문조사의 경우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 <그래프 4>이다. 그리고 <그래프 4>에 제시된 각 목표별 평균값의 변화폭만을 별도로 제시한 것이 <그래프 5>이다.

---

32) 위 9가지 목표는 Robert V. Stover가 미국 로스쿨 연구에 활용하였던 설문지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Robert V. Stover, *supra* note 10, p.126).



<그래프 4> 삶의 목표 중요 정도의 변화 추이<sup>33)</sup>



<그래프 5> “직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삶의 목표” 평균값의 변화폭

그런데 위 그래프들 상에 나타난 ‘1차 설문조사 응답의 평균값’과 ‘2차 설문조사 응답의 평균값’의 차이는, 어쩌면 대다수 응답값은 1차 설문조사에서나 2차 설문조사에서나 동일한데, 예외적인 몇 개 응답들(소위 이상점: outlier)로 인한 차이일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예외적 가능성의 타당 여부를 판별해내기 위해, 통계프로그램 R을 활용하여 T 검정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2차 설문조사 응답들의 평균’과 ‘1차 설문조사 응답들의 평균’이 서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정하였다.

33) 1차 설문조사 평균값과 2차 설문조사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들에 대해서만 박스 처리를 하였다.

1차 설문조사의 응답과 2차 설문조사의 응답은 설문응답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이다. 그러므로 Paired T-Test가 아닌 Two Sample T-Test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각 목표별로 1차 설문조사 응답값들과 2차 설문조사 응답값들의 분산이 같은지 여부를 검정한 후, 분산이 다를 경우엔 Welch의 T-test를 적용하였고, 분산이 같을 경우엔 Pooled Variance를 이용한 T-test를 적용하였다.<sup>34)</sup>

그 결과 돈, 고용안정, 미래선택, 흥미의 변화폭(4학기 평균값과 1학기 평균값의 차이)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up>35)</sup> 반면 ‘사회정의실현’(P값: 0.0001), ‘좋은 선배법조인의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P값: 0.0001보다 작음)의 변화폭은 95% 신뢰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위치’(P값: 0.08), ‘여가’(P값: 0.11), ‘창의적인 일’(P값: 0.17)과 같은 인생목표들도 비록 95% 신뢰수준엔 미달하지만, 변화폭이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사회정의실현에 대한 의지 감소

위 통계분석결과, 1학기에서 4기로 접어들면서 42기 사법연수생들이 보인 의식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사회정의실현에 대한 의지 감소였다. 9가지 삶의 목표들 중 1학과 4학기의 평균값 변화폭이 가장 컸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정의실현(공익활동)이란 목표의 중요정도가 4기로 접어들면서 평균 약 1점 정도밖에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변화폭이 미미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리고 실제 이 정도 변화 폭만으로는, 일각의 추측처럼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치면서 사법연수생들의 사회정의실현의지가 급감하였다’고 보기는 분명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위 설문조사결과를 생각해보면, 사법연수생들은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전부터 사고방식의 많은 부분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을 성인들이다. 이러한 성인들의 사고방식이, 약 1.5년 만에 이 정도 변화추이를 보였다면, 이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회현상이라 생각된다.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이러한 변화는,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치면서 사법연수생들의

34) 자세한 위 통계방법론의 원리와 사용방법에 대해선 안재형, **R를 이용한 누구나 하는 통계분석**(한나래, 2011), pp.67-76을 참조함.

35) 각 목표에 대한 T 검정에 따른 P값은 돈(0.77), 고용안정(0.75), 미래선택(0.38), 흥미(0.96)으로서, “1학과 4학기 인생목표 선호값의 평균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공익적 관심이 감소하는 과정을 밝힌, 필자의 과거연구결과<sup>36)</sup>와도 일치하는 결론이다. 그리고 이는 앞서 2. 가. 부분에서 언급하였던, 미국 로스쿨생들이 로스쿨 과정을 통해 겪는 변화에 대한, Robert V. Stover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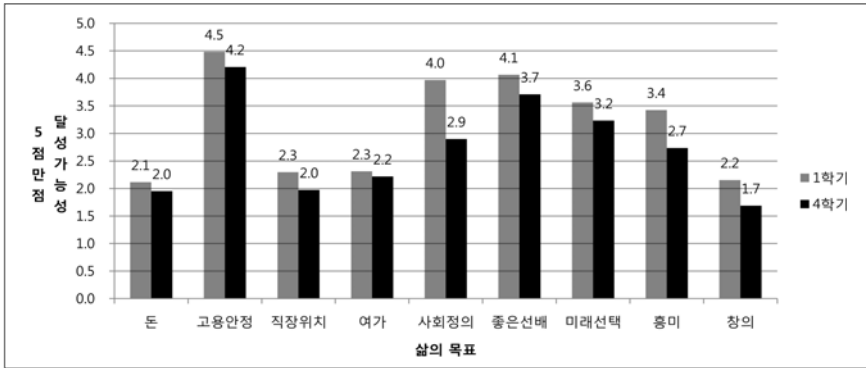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사회정의 실현의지 감소는, 앞서 본 판사, 검사의 선호도 감소 및 중대형 로펌의 선호도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프 6>, <그래프 7>, <그래프 8>의 사회정의실현의지 관련 부분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중대형로펌 소속변호사는 판사, 검사와 비교할 때 사회정의실현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직업으로 42기 사법연수생들이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사회정의 실현의지 감소로 인해, 중대형로펌 소속변호사의 단점은 가려지고, 다른 장점들이 부각되게 된 것이다.

#### 나) 판사, 검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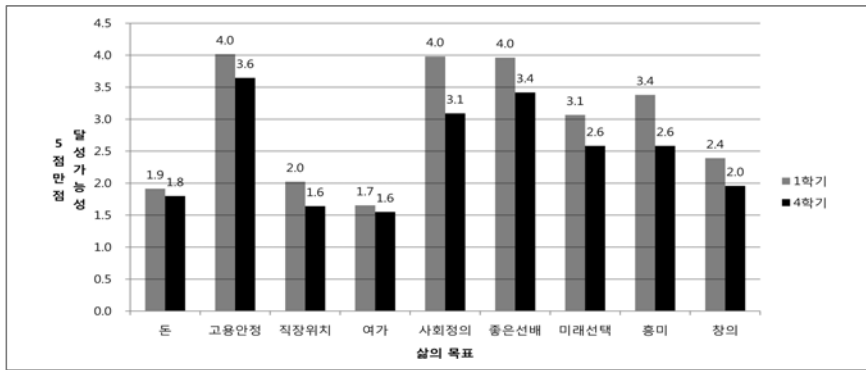
##### (1) 설문조사 개관

필자는 42기 사법연수생들에게, 각 직업을 선택할 경우 그 직업을 통해 앞서 본 인생의 9가지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 5점 척도(응답값이 높을수록 해당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로 응답하게 하였다. <그래프 6>, <그래프 7>, <그래프 8>은 ‘판사, 검사, 중대형로펌 변호사를 통한 각 인생목표의 달성가능성’에 대한 응답들을, 1차·2차 설문조사 별로 평균해내어 서로 비교하여 본 그래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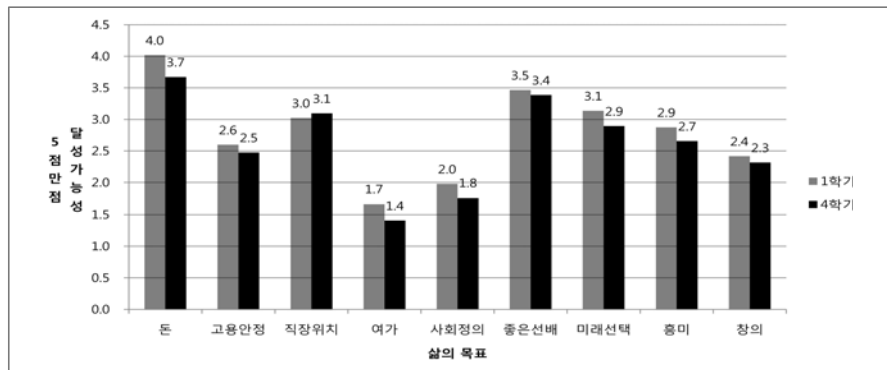
36) 사법연수생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험과 사고의 과정을 거쳐 사회정의실현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는지에 대해서 이준석, 전계논문, pp.256 이하를 참조할 것.



<그래프 6> 판사를 통한 인생목표 달성가능성에 대한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인식 변화 추이(1학기 vs 4학기)



<그래프 7> 검사를 통한 인생목표 달성가능성에 대한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인식 변화 추이(1학기 vs 4학기)



<그래프 8> 중대형로펌 소속변호사를 통한 인생목표 달성가능성에 대한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인식 변화 추이(1학기 vs 4학기)

## (2) 판사, 검사에 대한 전반적 인식의 악화

위 그래프들을 살펴보면, 판사, 검사를 통해 각 인생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42기 사법연수생들은 1학기에서 4학기로 접어들면서 좀 더 부정적인 응답을 많이 하고 있다. 물론 중대형로펌 소속변호사에 대한 인식도 4학기로 접어들면서 나빠지긴 하였다. 하지만 판사·검사에 비해선 그 나빠진 정도가 훨씬 덜 하다. ‘판사를 통한 각 인생목표 달성가능성’에 대한 응답의 경우, 1차 설문조사 시점에서 2차 설문조사 시점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인식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검토해보면, 각 인생목표별 달성가능성 평균값의 하락폭(4학기-1학기)을 9개 인생목표에 관하여 전부 합하자 그 총합이 -3.8이었다. 검사의 경우는 총합이 -4.1이었다. 반면 중대형로펌 소속변호사의 경우 -1.5로 그 하락폭이 훨씬 낮았다. 중대형로펌 소속변호사의 하락폭은 필자가 설문조사에서 다룬 모든 직업 중에서도 가장 낮았다. 이는 4학기로 접어들면서 모든 법조직역을 통틀어, 중대형로펌 소속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가장 덜 나빠졌음, 즉 상대적으로 가장 좋아졌음을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4학기로 오면서 42기 사법연수생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중대형로펌 소속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고, 판사, 그리고 특히 검사의 경우, 그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 이러한 변화는 중대형로펌 소속변호사에 대한 선호는 증가하고, 판사, 검사에 대한 선호는 하락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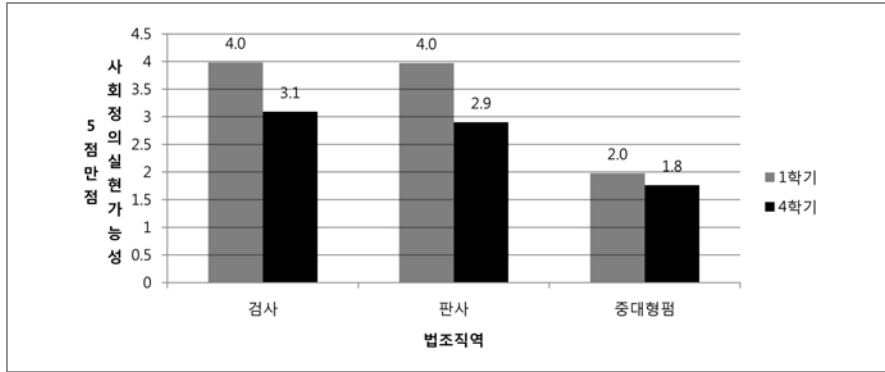
## (3) 판사, 검사를 통한 사회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

보다 구체적으로 ‘각 직업을 통한 인생목표별 달성가능성’에 관한 인식변화를 살펴보면, 4학기로 접어들면서 판사, 검사라는 직업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42기 사법연수생들이 크게 증가하였다.<sup>37)</sup> (아래의 <그래프 9> 참조) 반대로 중대형로펌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판사, 검사에 비해 부정적인 답변의 증가폭이 훨씬 낮았다.<sup>38)</sup>

37) 검찰에 대한 이러한 인식 변화는 시사주간지 <시사HN>에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결과,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2011-2012년 사이에 하락한 점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고제규, “검찰 신뢰도, 위험수위까지 추락”, 시사HN (2012. 10. 23), <http://m.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63>, 2013. 1. 22. 확인.

38) 모든 직업 전반에 걸쳐, 해당 직업을 통해 사회정의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방향으로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인식이 변화한 점은, 앞서 2. 가. 부분에서 언급하였던, 미국 로스쿨 생들에 대한 Robert V. Stover의 연구결과 중 “로스쿨 과정을 거치면서 공익적 직업을 통해 실제로 이타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 즉 공익적 직업에 대한 기대(expectation)가 감소하였다”는 부분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이는 중대형로펌에 대한 선호도 증가, 판사 및 검사에 대한 선호도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프 9> 각 직업을 통한 사회정의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 변화

#### (4) 선배로부터 배움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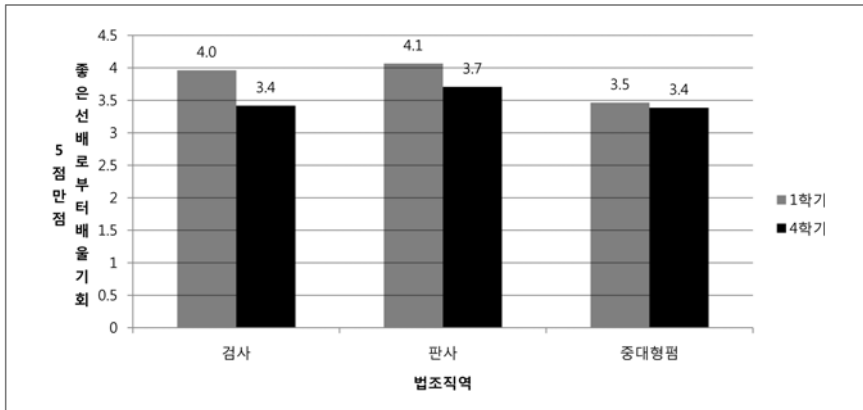
앞서 <그래프 4>, <그래프 5>에서 본 바와 같이, 4학기로 접어들면서 “첫 직장 에서 경험이 많은 선배 법조인으로부터 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응답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런데 아래의 <그래프 10>에 따르면, 해당 직업을 통한 사회정의실현가능성과 마찬가지로, 판사, 검사라는 직업을 통해 이러한 배움의 기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숫자가 4학기로 들어오면서 증가하였다. 판사보다 검사에 대해 이러한 부정적인 답변의 증가폭이 조금 더 컸다. 반면 중대형로펌을 통해 좋은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답변의 증가폭이 판사, 검사에 비해 훨씬 낮았다.

요컨대 1학기엔 좋은 선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중대형로펌보다는 법원, 검찰에서 더 많이 주어질 것이라고 42기 사법연수생들이 생각하였다. 하지만 4학기에 들어와서는, 검사의 경우 중대형로펌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sup>39)</sup>, 판사의 경우는 중대형로펌보다 근소하게 높은 정도로만 좋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

<sup>39)</sup> 2차 설문조사 시점에서, 검사와 중대형로펌 소속변호사의 ‘좋은 선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응답 평균값을 Two Sample T-Test로 비교해보면, P값이 0.84가 나올 정도로 양자는 비슷하다.



이라고, 42기 사법연수생들이 생각하게 된 것이다.<sup>40)</sup> 이러한 정황 역시 중대형로펌 소속변호사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판사, 검사에 대한 선호가 하락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래프 10> 각 직업을 통해 좋은 선배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 변화

#### (5) 직장위치에 대한 만족도 측면

##### (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직장 위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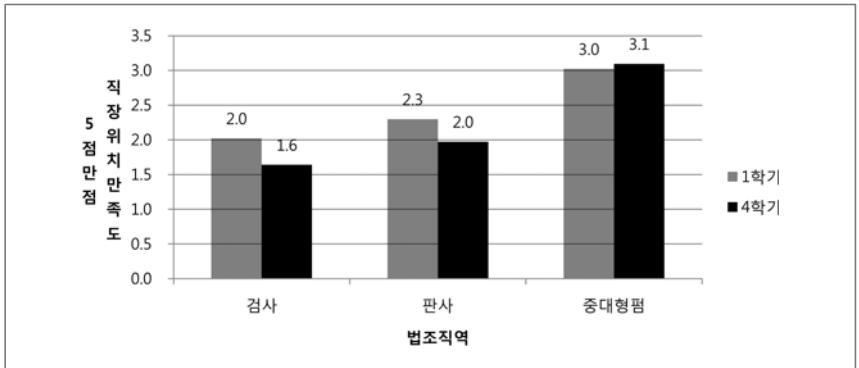
앞서 <그래프 4>, <그래프 5>에서 본 바와 같이, 4학기로 접어들면서 “만족스러운 직장위치가 중요하다”는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응답이 증가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생각해볼 수 있다. 사법연수생들의 경우, 서울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리하여 주변 친구들이 서울에 취직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미혼인 사법연수생들의 경우 소개팅 및 선을 보기도 서울이 유리할 것이다. 또한 주요 대학이 서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기에도 서울이 유리할 것이다. 그 외에도 대도시로서 서울이 가진 여러 장점 때문에 많은 사법연수생들은 서울에 취직하기를 원한다.

40) 이와 관련하여 보다 좋은 배움의 기회를 얻기 위해, 판사 대신 중대형로펌 소속변호사를 선택한 사법연수생의 사례에 대해선 이준석, 전계논문, pp.250 이하에 등장하는 사례 4의 경우를 참조할 것.

(나) 잦은 인사이동 및 지방근무를 해야 하는 판사, 검사

그런데 판사, 검사는 짧게는 1~2년, 길게는 4년 간격으로, 서울이 아닌 지방 여기 저기로 임지를 옮겨 다니면서 근무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반면 대부분의 중대형로펌은 서울에 있고, 임지를 옮겨 다니면서 근무해야 할 필요가 거의 없다.

아래의 <그래프 11>에 따르면, 4학기로 들어서면서 직장위치 만족도와 관련하여, 판사, 검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였다. 이는 42기 사법연수생들이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치면서 앞서 언급한 판사, 검사의 임지이동 측면을 좀 더 심각하게 느끼게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면 직장위치 만족도에 관하여, 중대형로펌 소속변호사에 대한 인식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는 중대형로펌 소속변호사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판사, 검사에 대한 선호가 하락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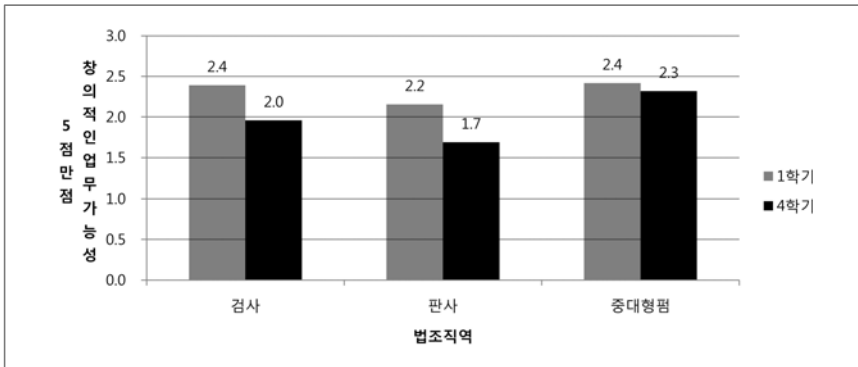
<그래프 11> 각 직업을 통해 만족스러운 직장위치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 변화

(6) 창의적인 업무내용에 대한 만족도 측면

앞서 <그래프 4>, <그래프 5>에서 본 바와 같이, 4학기로 접어들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응답이 증가하였다.<sup>41)</sup>

41)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이러한 변화는 앞서 2. 가. 부분에서 언급하였던, 미국 로스쿨생들에 대한 Robert V. Stover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런데 아래의 <그래프 12>에 따르면, 4학기로 들어서면서 판사, 검사라는 직업을 통해 창의적인 일을 하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42기 사법연수생들이 증가하였다. 반면 이와 관련하여 중대형로펌 소속 변호사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의 증가폭이 미미하였다. 이 역시 중대형로펌 소속 변호사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판사, 검사에 대한 선호가 하락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래프 12> 각 직업을 통해 창의적 업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 변화

#### 다. 기타 직업선호 변화의 원인에 대한 대안적 가설들

##### 1) 성적이 낮은 사법연수생들의 자기합리화일 가능성

판사, 검사에 대한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선호도 감소에 대해 ‘판사, 검사를 지망했지만 사법연수원 성적이 나빠서 판사, 검사를 지원할 수 없게 된 42기 사법연수생들도 많았을 것이다. 그들이 자기합리화 차원에서, 자신의 낮은 성적 때문에 받아들여야만 했던 직업인, 가령 소규모사무실 소속변호사라는 직업을, 마치 자신이 판사, 검사를 포기하면서까지 선택했을 정도로, 진정으로 가장 선호하는 직업인 양 응답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자기합리화 효과를 고려할 때, 판사, 검사에 대한 선호 감소라는 설문조사결과는 실제 현실보다 상당부분 과장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비판(이하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자기합리화 비판’이라 줄여서 부르겠음)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위와 같은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록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시점에는 자신의 낮은 성적 때문에 판사 또는 검사를 지원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법조일원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호사로 3년 활동한 후 경력직 판사 혹은 검사채용을 노려볼 수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력직 판사의 경우, 앞으로는 모든 초임법관들을 이 방식으로만 채용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인원이 채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머지않은 미래에 기회가 열려있는 상황에서 성적이 낮은 42기 사법연수생들이, 어쩔 수 없이 현재 직장을 선택했다는 자괴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오직 자기합리화만을 목표로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으리라 보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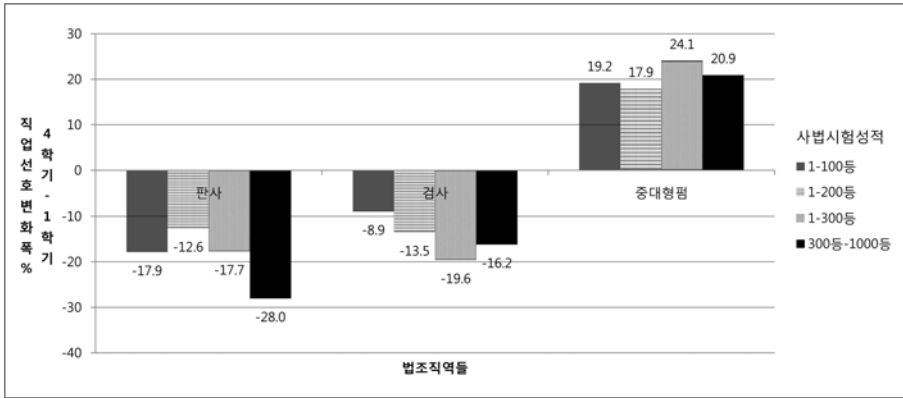
그리고 비록 필자가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사법연수원 성적을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사법시험 성적은 조사하였다.<sup>42)</sup> 통상 사법시험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사법연수원 성적도 좋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만약 사법시험 성적이 상위권인 사람들만을 분석하였을 때에도 판사, 검사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감소한다면 위 자기합리화 비판은 다소 신뢰하기 힘들게 된다.

아래의 <그래프 13>를 보면 사법시험 성적이 상위권이건 하위권<sup>43)</sup>이건 큰 관계 없이, 판사, 검사에 대한 선호가 크게 감소하고 중대형로펌 소속변호사에 대한 선호가 크게 증가하는 패턴이 발견된다. 특히 어떤 직업이든 자신이 선택하면 취직이 가능한, 사법시험 최상위권인 1~100등의 직업선호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발견되고 있다.

물론 사법시험 성적이 낮아질수록 판사, 검사 선호의 감소폭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은 자기합리화 비판의 예측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 하지만 그래프의 추세를 볼 때 그러한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며, 그러한 경향이 그리 크지도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기합리화 비판의 설명력은 크지 않아 보인다.

42) 설문지 질문항목은 “귀하의 사법시험 성적은 어디에 속하십니까?”였고, 보기는 “① 1~100등 ② 100~200등 ③ 200~300등 ④ 300~600등 ⑤ 600~1000등”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었다.

43) 통상 사법연수원 성적이 300등 정도는 되어야 판사, 검사, 중대형로펌 소속변호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의 사법연수원 성적이 300~1000등일 경우, 사실상 그가 위 3가지 직업에 취직할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필자는 이를 고려하여 사법시험 성적이 300~1000등인 응답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서 <그래프 13>에 표시하였다.



<그래프 13> 사법시험 성적 수준에 따른 직업선택 변화폭(4학기~1학기)<sup>44)</sup>

2) 중대형로펌 채용시즌의 영향 가능성

42기 사법연수생들은 2학기 시험을 마치고 나서부터 중대형로펌에 원서를 넣기 시작했고, 면접을 통해 채용여부가 결정되었다.<sup>45)</sup> 일부 채용이 빨리 확정된 사람들은 3학기 시험 이전임에도 채용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3학기 시험 이후에 채용이 확정된 42기 사법연수생들 역시 많았다. 특히 42기 사법연수생들부터는 3학기 시험 이후에 변호사 실무수습 과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자의 2차 설문조사 이후인 4학기 중에 채용이 확정된 42기 사법연수생들도 많았다.

즉 2차 설문조사 당시는 많은 42기 사법연수생들이, 중대형로펌에 채용되기 위해 애를 쓰던 시기였다. 비록 중국에는 로클릭이나 검사를 지원할 생각이더라도, 반드시 로클릭이나 검사로 취직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중대형로펌의 채용확정을 받아놓고 나중에 이를 철회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sup>46)</sup>

44) 흑백으로 표시된 그래프들이 서로 구별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프 13>에 대한 보충설명을 덧붙인다. <그래프 13>의 경우, X축을 기준으로 판사 항목의 경우 4개의 그래프가 존재한다. 가장 왼쪽의 첫 그래프(회색)는 사법시험 성적이 1~100등이었던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직업선택변화폭(4학기 선택비율-1학기 선택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 바로 오른쪽 그래프는 사법시험 성적이 1~200등이었던, 그 오른쪽은 사법시험 성적이 1~300등이었던, 가장 오른쪽 그래프는 사법시험 성적이 300~1000등이었던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직업선택변화폭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그래프 구성은 검사, 중대형로펌 항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5) 그리하여 중대형로펌에 취업이 확정될 경우, 이에 대해 사법연수생들은 소위 “컨펌”을 받았다고 표현한다.

46) 이를 소위 “보험용 컨펌”이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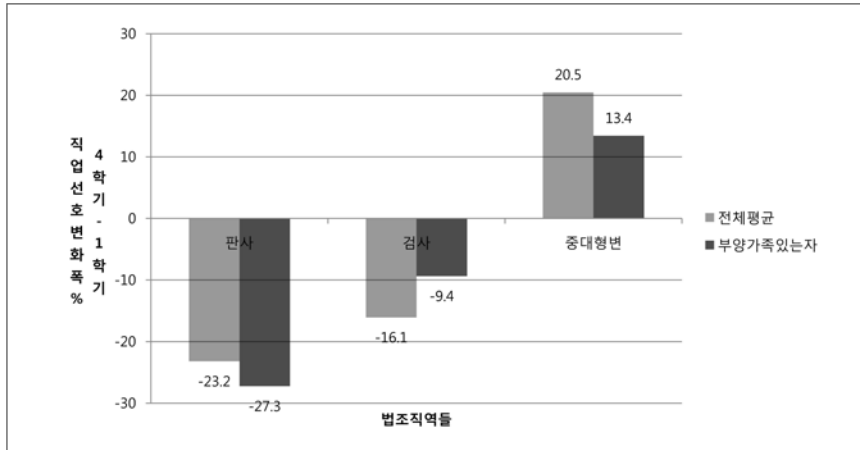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이루어진 2차 설문조사결과는 중대형로펌에 대한 선호가 훨씬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지, 반면 아직은 채용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판사, 검사에 대한 선호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지’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필자의 답변은 위 4. 다. 1)과 유사하다. 물론 그러한 시기적 요인이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당시 시기가 중대형로펌의 채용 시즌이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중대형로펌을 선호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보험용으로 채용확정을 확보해 놓으려는 42기 사법연수생이라면, 설문지에 ‘자신이 진정으로 가장 원하는 직장’으로 중대형로펌을 적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된다.

### 3) 경제적 이유에 의한 변화 가능성

또한 ‘4학기로 오면서 결혼, 출산 등 사회적 책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봉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판사, 검사보다 봉급이 많은 중대형로펌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필자는 설문조사의 질문항목에 “현재 자신이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숫자(배우자, 부모, 자식 등 모두 포함)”를 기재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1명 이상 있는 42기 사법연수생의 비율이 1학기엔 약 17%였는데 4학기엔 약 22%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처럼 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중대형로펌에 대한 선호도는 증가하였을까? 부양가족이 1명 이상 있는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직업선호 변화폭을 전체 사법연수생 직업선호 변화폭과 비교한 것이 다음의 <그래프 14>이다.



<그래프 14> 부양가족 유무에 따른 직업선호 변화폭(4학기~1학기)

<그래프 14>에 따르면 급여를 더 많이 주는 중대형로펌에 대한 선호 증가폭이,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42기 사법연수생 집단보다, 오히려 전체 42기 사법연수생 집단에서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42기 사법연수생 집단의 경우, 비록 판사에 대한 선호감소폭은 전체 42기 사법연수생 집단보다 더 컸지만, 검사에 대한 선호감소폭은 전체 42기 사법연수생 집단보다 더 작았다. 따라서 앞서 제기된 비판은 위 <그래프 14>를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없기에, 그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 5. 결 론

### 가. 연구의 요약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법연수원 입소 직후 시점(1학기)과 원내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시점(4학기)을 비교해 본 결과,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직업선호는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사법연수원 입소 직후의 42기 사법연수생들은 대부분 판사, 검사를 선호하였다. 하지만 4학기에 접어들자 판사, 검사에 대한 선호는 상당 부분 감소하였고, 반면 중대형로펌 소속 변호사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다.

그 원인으로서는, 먼저 객관적 요인으로, 로클릭 제도의 도입과 함께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판사임관이 불가능해진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주관적 요인으로, ①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사회정의실현에 대한 의지가 4학기로 접어들면서 감소한 점, ② 판사, 검사라는 직업을 통해 ‘사회정의실현(공익활동)’, ‘경험 많은 선배 법조인의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 ‘만족스러운 직장위치’, ‘창의적인 업무 경험’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 나. 시사점

### 1) 판·검사의 인기 하락, 과연 바람직한가?

본 연구를 통해 42기 사법연수생들은 과거의 통념처럼 성적이 좋은 순서대로 판사 먼저, 그 다음 검사, 그 다음 변호사를 지망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해졌다. 판사와 중대형로펌 소속변호사에 대한 선호도는 유사해졌고, 검사에 대한 선호도는 훨씬 낮아졌다.

그런데 과연 이처럼 새내기 법조인들 사이에서 판사, 검사의 인기가 떨어지고, 중대형로펌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소위 공익)이란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선 다소 의문이 든다. 조금 과장하여 이야기해 보면, ‘국가가 세금을 들여 교육도 시키고 공무원 월급도 주어가면서 양성해낸 사법연수생들이, 중대형로펌에 취직하여 거액의 수입료를 낼 여력이 있는 사람들을 변호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판사 혹은 검사로 임관하여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중대형로펌으로 간 우수한 인재들이 경력직 판사, 검사라는 형태로 공직에 되돌아오지 않는 한, 과거에 비해 우수한 인재들이 중대형로펌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2) 정확한 원인 파악을 통한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

만약 판사, 검사의 인기 하락과 중대형로펌의 인기 증가라는 경향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법원과 검찰에서는 보다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법연수생들은 통념처럼 단순히 보다 많은 금전적 보상만을 위해 판사, 검사보다 중대형로펌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사법연수생들은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이 판사, 검사라는 직업을 통해 ‘사회정의실현



(공익활동)', '경험 많은 선배 법조인의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 '만족스러운 직장 위치', '창의적인 업무 경험'이라는 인생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 그리고 사법연수생들은 사법연수원 과정을 통해 중대형로펌 소속변호사라는 직업이, 위 인생목표들을 달성함에 있어서 판사, 검사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측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측면이 사법연수생들의 직업선택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따라서 법원, 검찰에서 보다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고자 한다면,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 3) 사법연수생들의 사회정의실현에 대한 관심 감소: 해결책 필요

그리고 판사, 검사의 인기가 감소한 데에는,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치면서 사법연수생들의 사회정의실현에 대한 의지가 감소한 점 역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sup>47)</sup>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엘리트 집단인 법조인을 양성해내는 과정 중에, 사법연수생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은 분명 문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의 사법연수원 교육제도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진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의 경우도, 본 연구뿐만 아니라 미국의 선행연구를 참조할 때, 사법연수원 과정과 비슷한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고민이 필요하다. 관련 해결책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큰 주제이기 때문에, 추후의 연구들에 맡기고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겠다.<sup>48)</sup>

## 다. 본 연구의 한계

1) 앞서 언급한 대로, 1차 설문조사 대상과 2차 설문조사 대상을 동일하게 유지하였다면, 보다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했을 것이다. 갑작스러운 사법연수원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그러지 못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47) 물론 사법연수생들 모두가 애초에 사회정의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여 사법연수원에 입소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치면서,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여러 삶의 목표 중 사회정의실현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관련하여 사법연수생들이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들로 인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서서히 공익적 관심이 쇠퇴하게 되는지에 관해서는 이준석, 전계논문, pp.256 이하의 여러 인터뷰 사례들을 참조할 것.

48) 관련하여 사법연수생들의 공익적 관심 쇠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계논문, pp.256 이하의 내용을 참조할 것.

2) 본 연구는 오직 42기 사법연수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그동안 사법연수생들의 직업선택 등에 관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과거와의 비교를 통해 직업선택 등에 대한 장기적인 변화 추이까지 분석해내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42기 사법연수생들이 보인 변화들이 과거에도 일어났던 것일지에 대해선, 사실 많은 부분이 물음표로 남겨져 있다(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어도 법조계의 환경이 현재와 유사해진 2000년대 이후에는 본 연구 결과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앞으로 관련 연구들이 축적된다면, 보다 장기적인 추세 분석 역시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해 본다.

3) 본 논문에서는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의 개편 등의 사정으로 인해, 42기 사법연수생들이 4학기 과정(법원, 검찰, 변호사 실무수습)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설문조사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필자의 과거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무수습 과정을 통해 사법연수생들의 각 법조지역에 대한 생각이 상당 부분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9)</sup> 이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4) 그리고 2차 설문조사 당시엔 중대형로펌을 선호하였지만, 판사나 검사가 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부모님, 주변 친지들의 영향 등<sup>50)</sup>으로 인해 마음을 바꾸어, 결국 사법연수원 수료 시점에는 로클릭이나 검사를 선택한 42기 사법연수생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필자가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사법연수원 수료 시점에, 다시금 설문조사를 수행하지 못하였기에 포착해내지 못하였다.

5) 마지막으로 2차 설문조사 항목에 응답자들의 사법연수원 성적을 물어보는 문항을 추가했다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했을 것인바, 아쉬움이 남는다.

## 라. 후속연구 제언

필자가 수행하였던 설문조사에는 42기 사법연수생들의 나이, 성별, 재산보유수준 등 여러 배경변수들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배경변수들과 42기

---

49)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이준석, 전계논문, pp.253-255의 사례13, 사례15의 경험을 참조할 것.

50)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이준석, 전계논문, pp.259-260의 사례14의 경험을 참조할 것.

사범연수생들의 직업선택과의 관계 등에 대한 횡단면 분석(cross-sectional data analysis)은 사정상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은 추후 별도의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투고일 2013. 1. 28	심사완료일 2013. 5. 28	게재확정일 2013. 5. 31
-----------------	-------------------	-------------------

### 참고문헌

- 고제규, “검찰 신뢰도, 위험수위까지 추락”, 시사IN (2012. 10. 23), <http://m.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63>, 2013. 1. 22. 방문.
- 김두식, **불멸의 신성가족 - 대한민국 사법패밀리가 사는 법**(창비, 2009).
- \_\_\_\_\_, **헌법의 풍경: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교양인, 2004).
- 김성현, “연수원 42기, ‘밥그릇’ 지키려 집단행동 물의”, 머니투데이(2011. 3. 2),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030214015580217&type=1>, 2013. 1. 21. 방문.
- 문병선, “대형로펌간 ‘빅딜’ 다가온다”, 자본시장 미디어 ‘the bell’ (2009. 4. 15), [http://www.thebell.co.kr/front/thebell\\_free/article/article.asp?key=51551](http://www.thebell.co.kr/front/thebell_free/article/article.asp?key=51551), 2013. 4. 17. 방문.
- 박신애, “제32기 사법연수생 8백명 입소식”, 법률신문(2001. 3. 2),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332&kind=AA>, 2013. 4. 17. 방문.
- 박원경 등, **판사 검사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부키, 2006).
- 손진석, “검찰 싫어’... 서울法大 출신 신입검사 크게 줄어”, 조선일보(2010. 10. 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11/2010101100076.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11/2010101100076.html), 2013. 4. 20. 방문.
- 신종철, “제33기 사법연수생 966명 수료”, 오마이뉴스(2004. 1. 1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64321](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64321), 2013. 4. 17. 방문.
- 안재형, **R를 이용한 누구나 하는 통계분석**(한나래, 2011).
- 유정인, “공익변호사 돕자” 사법연수원 42기 ‘낭만펀드’ 설립, 경향신문(2012. 6. 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042150105&code=10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042150105&code=100100). 2013. 1. 21. 방문.
- 이국운, “청년법관의 법적 사회화 환경: 군복무기간에 대한 참여관찰의 보고를 중심으로”, **새울법학**, 제2권(1998), pp.329-354.
- 이상연, “‘법관즉시임용폐지’ 영향?...판사 선호도 ‘뚝’”, 법률저널(2011. 12. 16),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02006620034&tblName=tblNews](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02006620034&tblName=tblNews). 2013. 4. 20. 방문.

- 이준석, “사법연수원 과정이 공익적 관심을 갖고 있던 예비법조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인권법평론*, 제6호(2011. 3), pp.237-268.
- 이호영, 사법부의 판결경향 및 구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부르디외의 ‘아비투스’와 ‘장’ 개념을 동원하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2006. 2).
- 장진복, “국회 사개특위 ‘경력법관제·로컬러제’ 통과”, *법률방송*(2011. 6. 23), <http://www.courtvtv.kr/news/articleView.html?idxno=704>. 2013. 4. 20. 방문.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0년 전남대 로스쿨 재학생의 인권의식 및 공익인권교육 수요도 조사”, [http://hrcenter.jnu.ac.kr/intranet/bbs/board.php?bo\\_table=event1&wr\\_id=20](http://hrcenter.jnu.ac.kr/intranet/bbs/board.php?bo_table=event1&wr_id=20), 2013. 1. 21. 방문.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09년 전남대 로스쿨 재학생의 인권의식 및 공익인권교육 수요도 조사”, [http://hrcenter.jnu.ac.kr/intranet/bbs/board.php?bo\\_table=event1&wr\\_id=18](http://hrcenter.jnu.ac.kr/intranet/bbs/board.php?bo_table=event1&wr_id=18), 2013. 1. 21. 방문.
- 최규호, *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계 속 이야기*(법률저널, 2009).
- Erlanger, Howard & Klegon, Douglas, “Socialization Effects of Professional School : The Law School Experience and Student Orientations to Public Interest Concerns”, *Law and Society Review*, Vol. 13 (1978), pp.11-35.
- Stover, Robert, *Making It and Breaking It: The Fate of Public Interest Commitment during Law Schoo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9).
- Wooldridge, Jeffrey,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MIT press, 2002).
- Zivot, Eric, “Lecture notes on pooled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2012), <http://faculty.washington.edu/ezivot/econ582/introductionpaneldata.pdf>, 2013. 5. 2. 방문.

<Abstract>

## Why JRTI Students Are Getting Attracted to Big Law Firms Instead of Being a Judge or a Public Prosecutor? - Changing Patterns of Job Preferences of JRTI Students -

Lee, Joon Seok\*

In this article, I tried to find out how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JRTI hereinafter) students changed their job preferences in the course of their education and why they changed them. In order to explore this issue, I carried out my own surveys to JRTI students who entered JRTI on March 2010. I gave them my questionnaire twice in view of obtaining longitudinal data, first time one week after their entrance ceremony (March 9, 2011), second time right before their internship program started (May 23, 2012).

After reviewing my survey results, I found out JRTI students changed their job preferences quite dramatically during their years in JRTI. JRTI students mostly preferred judges and public prosecutors as their first career when they entered JRTI. But during the course of their years in JRTI, their preferences for judges and public prosecutors faded away. While in contrast, their preferences for big law firms increased a lot.

There are six reasons for this change. First, South Korea changed its system of appointing new judges in June 2011. Due to this reform, it became unavailable for newly graduates of JRTI to become judges right after their graduation. Newly graduates of JRTI should have more than 3 years field experience in order to apply for judges. Instead,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itiated a new ‘Law Clerk’ system for newly graduates. But the status of a law clerk is much insecure than a judge, because one can work as a law clerk only for two years. After that one has to find

---

\* Ph. D. Student,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an another job in order to fulfill 3 years field experience requirement if one wants to apply for judgeship. This made it harder for JRTI students to become a judge. It resulted in the decline of JRTI students' preference for judgeship. Second, JRTI students' commitment to social justice fell during their years in JRTI. Therefore, the shortcoming of working in a big law firm, which is far from empowering minorities, has become of less importance to JRTI students. Third, skepticism began to grow among JRTI students that it is not easy to make a progress in social justice by working as a judge or a public prosecutor. Fourth, JRTI students began to regard it much more important to have an opportunity to learn from their seniors in their workplace. But with regard to this point, their expectation for judges and public prosecutors dropped during their years in JRTI. Fifth, as far as creative working environment is concerned, JRTI students responded that their expectation for judges and public prosecutors fell during their years in JRTI. Finally, JRTI students began to emphasize the desirable location of their jobs. While judges and public prosecutors have to move to their new working location every couple of years, associates in a big law firm mostly work in Seoul and do not have to move. Accordingly, JRTI students began to prefer working for a big law firm.

Keywords: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job preference, value system, law school, professional socialization, law clerk system

